#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

애경케미칼 주식회사

#### 제1장 총 칙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애경케미칼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제3조 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, 주요주주, 관계회사, 기타 이해관계자와 회사 간의 거래를 심사하고 승인해야 한다.
  - 1. 상법
  - 2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  - 3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  - 4.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  - 5.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
- ② 위원회는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이사 등과 회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사전 심사해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거래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, 회사에 거래의 주요 내용, 계약방식 및 거래상대방 선정기준, 세부 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.

-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성과 및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(이하 "본 규정"이라 한다)의 내용을 매년 검토하여,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의 개정을 이사회에 건의 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.

## 제2장 위원회의 구성

## 제4조 (구성 및 임기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 및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는 않는 한, 동 위원이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- ④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 잔여 사외이사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, 잔여 사외이사가 없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한다. 단,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여야 한다.

#### 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9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# 제3장 회 의

# 제6조 (회의의 종류 및 소집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.
- 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 단, 의결사항이 없을 경우는 소집하지 않는다.

#### 제7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 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 제8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, 장소를 정하여 그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.

#### 제9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.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 제10조 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1. 회사와 제3조 제1항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, 주요주주, 관계회사, 기타 이해관계자와 회사 간의 거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(이하 "내부거래"라고 한다)
    - (1) 단일 거래규모가 회사의 자산총액(최근 사업연도 말 별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을 의미하며, 이하 "자산총액"이라고 한다.)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
    - (2) 연간 거래총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
  - 2. 기승인된 거래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는 거래
  - 3.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이사 등과 회사와의 거래
  - 4. 법령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관련 사항
- ②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1. 이사회에서 한도 승인을 받은 내부거래의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
  - 2.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#### 제11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## 제12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의사록은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.

# 제13조 (통보의무)

위원회는 결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결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4장 보 칙

## 제14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## 제15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# 부 칙 (2022.03.28.)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